

성심종합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1동 243-7 우)143-200 전화) 452-3200, 446-0010 팩스) 02-457-5659

2018. 6. 8.

발신 :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강수림

수신 :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자 유준상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 질의

본인은 대한불러경기연맹 14대, 15대 회장을 연임하다가 2016. 8. 28. 임기를 마치고, 아무런 임원을 맡지 않고 있다가 2018. 5. 17.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본인이 2018. 5. 17.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1-2. 답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1차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요트협회 규정은 그 문언상 회장으로 취임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취임하여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후임자가 1년 회장을 하다가 유고로 인하여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전임자는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관 상 연임제한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꼭 4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6. 8. 28. 회장 임기를 마치고, 아무런 임원을 맡지 않다가 20여개월이 지난 2018. 5. 17.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2차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대한요트협회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사례

법제처는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다가 다시 취임한 경우에도 이를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법제처 16-0234.

2016. 9. 7. 참조) - 끝

